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7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720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9 선고 2020가합1014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박승득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변론 종결2021. 11. 25.

판결 선고2022. 1. 1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19. 선고 2020가합10149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176,788,731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2면 아래에서 4행 "배분금액 525,074,020원"을 "배분할 금액 535,074,020원"으로, 아래에서 2, 3행 "각 배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위 돈을 수령하였다"를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배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배분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위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 3면 4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주장

C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분받아야 할 돈 39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배분받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배분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 4면 9, 10행 "C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를 "C는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절차가"로 고쳐 쓴다.

○ 5면 12행 "변제하지"를 "변제받지"로 변경하고, 5면 아래에서 5행 "월 2%"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2%"로 고쳐 쓴다.

○ 6면 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1) 반환 범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취득한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없었을 경우 정당하게 배분받았을 돈과 원고가 실제로 배분받은 돈의 차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총 배분할 금액 535,074,020원에서 체납처분비, 선순위 조세채권 등을 제외한 배분금 잔액이 464,536,9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에 대한 배분이 무효로 될 경우, 권리의 설정일자가 원고의 가압류채권 이후인 채권으로서 ①

원고의 가압류채권, ② 주식회사 I의 가압류채권, ③ J의 가압류채권, ④ K의 근저당권, ⑤ 송파구청의 조세채권, ⑥ 아산시청의 조세채권, ⑦ 인천광역시의 조세채권, ⑧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의 조세채권이 있는데, 각 가압류채권(①~③)이 K의 근저당권(④)과는 동순위이나, 위 근저당권이 각 조세채권(⑤~⑧)보다는 선순위이며, 각 조세채권이 각 가압류채권보다는 선순위여서 배분순위에 순환 내지는 모순관계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배분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분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우열관계가 상대적인 경우, 먼저 전체 배분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기초하여 안분한 다음, 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자기보다 후순위인 권리자의 배분액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분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흡수 순서는 흡수할 채권자들 중 선순위 채권자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흡수당할 채권자들 중 후순위 채권자부터 흡수당하며,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이전 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부족액과 이전 단계에서의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을 한도로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권리의 설정일자가 원고의 가압류채권 이후인 각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① 전체 배분액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기초하여 안분한 후, ② 근저당권자인 K이 후순위 권리자인 조세채권자들의 안분액을 1차로 흡수하고, ③ 조세채권자들이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 등 가압류채권자의 안분액을 2차로 흡수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배분액은 246,519,766원이 된다.

원고(가압류)	400,000,000	248,518,546		-1,998,780	246,519,766
주식회사 I(가압류)	119,906,035	74,497,184		-599,164	73,898,020
J(가압류)	70,000,000	43,490,746		-349,787	43,140,959
K(근저당권)	150,000,000	93,194,455	+4,836,009		98,030,464
송파구청(압류)	89,660	55,705	-55,705	+33,955	33,955
아산시청(교부청구)	22,340	13,880	-13,880	+8,460	8,460
인천광역시(교부청구)	38,610	23,988	-23,988	+14,622	14,62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교부청구)	7,633,130	4,742,436	-4,742,436	+2,890,694	2,890,694
합계	747,689,775	464,536,940			464,536,940

2) 반환 방법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때에는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187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69,731,035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배분금지급청구권 중 176,788,731원(=246,519,766원 - 69,731,035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가 배분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배분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태호

판사장지용

판사이봉락

별지